

濟州道開發特別法에 의한 歲入制度에 對한 考察

金 暢 禧*

目 次

- | | |
|-----------------------|----------------|
| I. 머리말 | 4. 地域開發債券의 發行 |
| II. 濟州道開發特別法에 의한 歲入制度 | 5. 觀光福券의 發行 |
| 1. 地下水原水代金の 부과 | 6. 觀光振興寄與金の 募金 |
| 2. 開發負擔金の 전액 지원 | III. 맺는 말 |
| 3. 國庫補助의 引上 지원 | |

I. 머리말

제주도개발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94. 6. 2일 제주도 공고 제 94-76호로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이 결정공고 되었다. 이 종합계획은 특별법의 정신과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의 기본목표를 수용하여 2001년까지의 제주도개발의 기본방향과 비전을 제시하고, 산업경제, 생활환경, 사회문화, 物的施設등 각종부문을 포괄하는 계획으로, 사회간접자본의 효율적인 투자방향과 민간부문의 투자활동을 유도하고 있다.

이 종합계획이 성공적인 추진에는 막대한 재원의 소요된다. 당초 종합계획 부문별 투자계획은 '94~2001년까지 총투자규모가 7조 3,901억원이었으나 이후 시·군별 실시계획수립과정에서 그 투자규모가 상향조정 되었는데 조정된 투자규모는 8,233억원이 증가한 8조 2,144억원에 이르고 있다." 이중 공공부문은 4조61억원으로 총투자규모의 48.7%에 해당된다. 공공부문의 투자는 도로, 항만, 수자원개발등 국가투자자 25%내외이고 그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게 된다. 그러나 제주도는 도·시군을 막론하고 재정수입기반이 되는 자원이 빈약하여 재정이 열악한 실정이다. 이런 사정에 비추어 특별법은 다른지역에 없는 제주도 특유의 재정 확충을 위한 제도를 도입 운영하고 있다. 그것은 ① 지하수 원수대금의 부과(법제25조제3항) ② 개발부담금의 전액 지원(법제29

* 濟州大學校 行政大學院 行政學科 地方自治專攻

1) 제주도, 제주도종합개발계획 : 647쪽, 1994.

조) ③ 국고보조의 인상지원(법제30조) ④ 지역개발채권의 발행(법제31조) ⑤ 관광복권의 발행(제31조의2) ⑥ 관광진흥기여금의 모금(제34조)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제도들은 특별법에서 처음 도입되면서 운영이 日淺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성과가 아직은 미지수라 할 수 있다. 또 지역개발채권이나 관광복권, 관광진흥기여금을 제외하고는 그 재원의 규모가 아주 적어 우리의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들이 처음 시도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연구해 볼 가치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그동안 이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중심으로 특별법이 의도하는 재정확충효과를 달성하고 있는지 또 운영상 어떠한 문제를 개선하고 발전시켜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살펴 보고자 한다.

II. 特別法에 의한 歲入制度

1. 地下水 原水代金 徵收制度

가. 地下水원수대금 징수제도의 導入배경과 내용

1) 지하수원수대금 징수제도의 도입배경

제주도는 화산활동에 의하여 형성된 섬으로 지형·지질 특성상 지층의 透水性이 커 地表水의 발달이 미약하여 '7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用水源을 전적으로 해안 湧出水에 의존하는 물이 귀한 지역으로 인식되었으나, '60년대 水源조사과정에서 막대한 양의 지하수 부존이 확인되어 '70년 이후 정부 주도로 管井을 이용한 지하수개발이 많이 이루어져 현재는 1인 1일 급수량은 육지에 비하여 다소 낮으나 상수도 보급율이 전국 최고 수준인 99.9%에 이르는 등 양적인 측면에서의 물문제가 해결되었다.

그러나 앞으로 산업개발에 따른 인구의 증가와 생활수준의 향상 및 관광개발등에 따라 제주도의 용수수요는 계속적으로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본도의 유일한 수자원인 지하수는 근래에 와서 일부 해안지역이 鹽水侵入, 생활하수 및 축산폐수에 의한 수질오염과 地下水位 저하 및 해안용출수량의 감소현상이 보고되고 있어 제주도 수자원의 개발, 보전, 관리에 전반적인 재검토가 요구되게 되었다. 특히 1990년부터 일기 시작한 수질오염에 대한 전국민적인 우려는 전도민의 지하수 자원에 대한 보전의식이 크

게 높아지게 되어 그 동안 개발에만 치중했던 정책을 환경쪽으로 전환시키는 계기를 마련하면서 특별법에 보전에 대한 많은 제도의 도입과, 동시에 전국 최초로 지하수 개발에 대한 규제를 가할 수 있는 지하수 굴착·이용허가 제도가 도입되게 되었다. 더불어 지하수를 도민이 공유하는 공공 재임과 동시에 부존자원으로 보고 형평성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사용하는 자에게 대가를 지불하게 하므로써 종합계획의 투자재원을 확보와 부분별한 지하수개발과 이용을 억제하기 위한 제도로 마련되었다.

2) 지하수 원수대금의 성격

지하수 원수대금의 성격을 규명하는 것은 앞으로 지하수 원수대금의 요율등을 조정하고 이를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의 문제와 관련된다.

지하수 원수대금하면 우리는 바로 상수도 사용료를 연상하게 되는데 이와는 성격이 다르다. 원수대금이라는 용어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제공하는 광역상수도의 原水라는 용어에서 따온 것 같으나 그 原水와는 다르다. 즉 한국수자원공사나 지방정부가 징수하는 상수도 사용료는 제공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하는 것인데 비해 지하수원수대금은 부존자원을 채취하는 댓가로 징수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현행법상 이와 유사한 제도를 살펴보면 “하천유수 사용시 점용료의 징수(하천법 제33조)”, “공유수면으로부터 引水할 때 점용료의 징수(공유수면관리법제7조)”의 경우를 들 수 있다. 이를 이론상 세외수입중에서 “사용료”로 구분한다. 사용료는 공공시설 또는 공공용재산을 사용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한 댓가로 징수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하수 원수대금의 경우도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으로 동일시 할 수도 있겠으나 공유수면의 引水나 河川流水는 그것을 일시사용 후 그 상태로 다시 되돌려 놓은 것으로 이해되고 이로 인하여 자원의 고갈문제등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와 달리 지하수인 경우는 지하수를 사용하는데 시설등을 제공하는 것도 아닐 뿐 아니라 지역주민이 공유하는 부존자원을 사용하는데 대한 댓가를 公課한다는 점에서 오히려 재산수입 쪽으로 이해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물론 현행법상 지하수가 국가나 자치단체의 재산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지하수는 공기이거나 바닷물과 같은 무한 자원이 아니고 유한하다고 인식하고 있고 도민 모두의 장래를 위하여 잘 관리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관점을 달리하고 싶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후술하는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개발세와 같은 조세와 같은 것으

로 보아야 할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다.

3) 지하수 원수대금 징수제도의 내용

특별법제25조제4항에서 “지하수를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원수대금을 부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므로써 지하수원수대금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가) 부과대상(시행령제17조, 시행조례제61조)

- ① 관광숙박업 또는 관광객 이용시설업을 이용하는 자
- ② 공장을 경영하는 자
- ③ 체육시설업을 경영하는 자
- ④ 먹는물 제조업, 식품접객업을 경영하는 자
- ⑤ 목욕장업을 경영하는 자
- ⑥ 식품제조, 가공, 소분·판매, 보존, 첨가물제조업을 경영하는 자
- ⑦ 숙박업, 위생처리업을 경영하는 자
- ⑧ 온천을 경영하는 자
- ⑨ 주류제조장을 경영하는 자
- ⑩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자
- ⑪ 의료기관을 경영하는 자
- ⑫ 자동차 정비업을 경영하는 자
- ⑬ 세차장, 세탁업을 경영하는 자

나) 부과율 및 산정방법

- ① 기본요율 : 제주도가 공급하는 상수도원가 공급가격의 50~100%
- ② 초과요율 : 기본량초과에 따라 2배에서 10배까지
- ③ 산정방법 : (기본요율×월간기본량) + (초과요율×월간기본량을 초과한 원수사용량)

※ 상수도원가 공급가격 : 톤당 28원40전

나. 지하수굴착·이용허가와 원수대금 징수

- 1) 지하수 이용허가 시군별·용도별 현황<별표 1>
- 2)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현황 <별표 2>

다. 지하수 관련 공과금 실태

1) 지역개발세

지방세법제253조 내지 제259조의 규정은 지역개발세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지역개발세의 과세대상은 지역의 균형개발 등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자원,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는 컨테이너에 대하여는 지역개발세를 부과한다.

지역개발세의 과세대상인 지하수는 지하수를 채수하여 음용수로 판매하는 경우와 온천법에 의하여 채수허가를 받아 온천수를 채수하여 목욕용수로 사용하는 것을 말하고, 지하수를 개발하여 식용수로 판매하거나 목욕용수로 활용하기 위하여 지하수를 채수하는 자는 지역개발세 납세의무가 있다.

지하수는 개발하여 채수된 물중 판매하기 위한 음용수는 톤당 150원, 목욕용 온천수는 톤당 75원, 기타용수는 톤당 10원을 부과한다. 그러나 제주도의 경우는 특별법에서 지하수원수대금을 징수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 징수를 피하기 위하여 제주도도세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법 적용만료시한인 2001년 12월 31일까지 적용을 보류하고 있다.

2) 수질개선 부과금

'95. 1. 5 법률 제4908호로 제정공포된 먹는물관리법 제28조의 규정은 공공의 지하수 자원을 보호하고 먹는물의 수질개선에 기여하게 하기 위하여 수질개선부담금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수질개선부담금은 제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한 먹는 샘물에 대하여 부과하고, 먹는샘물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부과율은 상당히 높은편인데 먹는 샘물의 판매가격의 100분의 20을 징수한다.

라.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문제점

<별표 2> '94년도 지하수원수대금 업종별 부과상황을 보면 '94년도에 총부과액은 3억 6,026만원이고 이중 징수액이 3억 2,735만원이다. 이는 이제도 도입시 기대했던 액수에 훨씬 못미치는 액수이다. 즉 이 정도의 세입을 가지고는 징수비용조차도 충당하지 못한다. 앞으로도 계속 이런 수준이라면 차라리 징수하지 않는 것이 재정운영 차원에서 바

⑥ 濟州道開發特別法에 의한 歲入制度에 對한 考察

람직하다. 이 제도만 놓고 본다면 적자운영이라는 뜻이다.

특별법 제27조는 제주도 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동제28조에서는 지하수원수대금을 세입으로 하고 이를 지하수보전 및 관리자금으로 활용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94년도에 지하수대책사업비 투자액을 보면 일반경상비를 제외하고 77억원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원수대금은 그 징수비용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볼 때 이 제도의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하겠다.

따라서 원수대금의 개발사업의 소요재원, 즉 지하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재원으로 어느 정도 역할을 기대한다면 현재의 부과요율, 부과기준, 부과대상 등을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2) 개선방안

가) 부과요율 및 부과기준의 개선

현행 지하수 원수대금은 톤당 28원 40전이다. 이는 현행 제주시 상수도요금중 가정용요금·농축산용요금의 20%, 영업용요금의 10%에 불과하다. 그나마 부과방법을 보면 광천음료수 제조업자인 경우만 100%를 부과하고 관광업 체육시설업자인 경우는 70%, 식품관련업·목욕장업자는 60%, 공장·자동차정비업·세차장인 경우 50%만 부과하고 있어 공장등의 경우 원수대금을 톤당 14원20전만 납부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따라서 이 요율은 상수도요금에 비하여 너무 저렴하기 때문에 물을 많이 사용하는 업소인 경우에 지하수 이용을 선호하는 원인이 되고 이것이 지하수굴착을 가중시키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런 요금정책이 환경오염을 부추기는 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부과요율을 최소한 상수도요금 수준으로 근접시키든지 아니면 지역개발세와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또한 부과요율의 산정방법도 뚜렷한 기준에 입각하여 설정되어진 것 같지 않고, 차등 부과 할 명분도 확실치 않다. 차제에 차등부과제 또한 폐지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나) 부과대상의 재검토

전술한 가. 3)에서 보듯이 지하수원수대금 납부자는 20여업종에 국한되어 있다. 그러나 '95년말 현재까지 허가된 3,150공중 원수대금 부과대상은 728공으로 23.1%에 불과한 실정이다. 비부과대상은 농축수산업용, 상수도용, 공동주택용, 공공용, 종교시설용 등으로 서민들의 생활용수로 제공되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이것들에 대한 원수대금의 면제

도 역시 지하수굴착을 부추기는 원인이 된다. 물론 그 요금을 저렴하게 할 필요는 있지만 최소한 상수도의 최소가격과 동일선상에서 부과되어야 한다. 다만 여기에 소요되는 용수는 어느정도 상수원으로 공급 해줄 수 있어야 한다는 전제가 뒤따라야 한다.

이런 논거에서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대상은 전면 재검토 되어야 하고, 현행부과 체계도 선택적으로 부과대상을 정할 것이 아니라 상수도요금체계와 같이 전부 부과대상으로 하되 용도에 따라 감면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 수수료 징수제도의 도입

지하수의 굴착이용을 위해서는 행정기관은 수질검사, 현지조사, 자료평가등 상당한 인력과 행정력이 소요된다. 그러나 현행규정은 수수료 징수에 관한 언급이 없다. 특수한 행정수요를 유발하는 행위에 대하여 개별적 특수이익을 향유하는 사람으로부터 그 비용을 징수하는 것은 당연함에도 제도상이 미비로 보아지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지하수 원수대금 징수는 지하수 보전과 관리의 전체적인 측면의 경영 논리로 收支均衡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 지하수라는 부존자원은 충분히 활용하되 수질오염등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서민생활의 안정과 삶이 질 향상을 위하여 저렴한 생활용수의 보장은 당국의 책임이기도 하지만, 지하수의 보전이라는 측면과 상수도요금과 비교하여 비용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할 때 현행 지하수 원수대금 징수제도는 불합리하고 지하수보전관리와 원수대금 징수에 소요되는 행정력 수요를 감안한 행정의 경영적 논리에도 맞지 않다. 이러한 문제는 정책결정자들이 도민의 정서에 비추어 적극적으로 문제시 하지 않는 것도 한 원인이다.

2. 開發負擔金の 全額支援

가. 개발부담금의 개요

1) 개발이익의 개념 및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이익이라함은 개발사업의 시행 또는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기타 사회·경제적 요인에 의하여 정상지가상승분을 초과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 또는 토지소유자에게

⑧ 濟州道開發特別法에 의한 歲入制度에 對한 考察

귀속하는 토지가액의 증가분을 말한다. 개발이익은 직접적인 토지개발뿐 아니라 주변지역의 개발, 토지용도지역변경, 행정청의 개발사업의 인가 등 사회·경제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지가상승분을 모두 포함한다.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사업은 開發利益還收에 관한 법률 제5조에서 정하는 주택개발사업등 10개사업과 이들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2) 개발이익의 환수 및 배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이 시행되는 토지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은 開發利益還收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개발부담금으로 환수하고 그외의 토지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은 토지초과이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초과이득세로 환수하게 된다.

환수된 개발부담금의 50%는 개발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시·군에 그 나머지 50%는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에 귀속된다. 또 토지초과이득세는 국세이므로 일단 일반회계에 납입된 후 50%는 지방자치단체에 양여되고 50%는 토지관리 및 토지균형개발특별회에 전입된다.

3)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의 설치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법에 근거하여 토지관리의 원활화와 지역균형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특별회계가 설치되었다.

이 회계의 세입재원은 토지공개념의 실현을 위하여 국가가 매입하거나 物納받은 토지의 매각대금·사용료·임대료, 초과소유부담금, 개발부담금, 과밀부담금등으로 구성되고, 이 회계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매입금, 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의 토지매입을 위한 자금의 융자, 지역균형개발사업·수도권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용자금, 지역균형개발·토지관리 및 토지정책의 합리화를 위한 조사·연구·교육비로 사용된다.

이회계의 '95년도 예산규모는 4,406억원으로 세출내용을 보면 보전 및 생활환경개선사업비 980억원, 지역사회개발사업비 2,296억원, 국토자원보전개발사업비 325억원, 중화학공업 및 상공지원사업비 804억원, 수출 및 기타상공지원사업비 400억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 제주도지역에서의 개발부담금 징수상황

1)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상황('90. 3. 2. ~)

- ┌ 부과 : 72건 5,990백만원
- └ 징수 : 43건 4,140백만원

2) 년도별 징수상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제 주 시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
계	4,140	1,502	2,285	319	33
'90					
'91	552	222	98	233	
'92	632	382	249		
'93	1,999	42	1,936	14	7
'94	560	496	1	43	20
'95. 6. 30현재	395	360		29	6

자료 : 제주도 지역개발과 내부자료

3) 개발부담금 국고귀속분 개발특계 세입

○ 특별법 제정('91. 12. 31) 이전 국가귀속분 : 261백만원

○ 제주도개발사업특계 귀속분 : 1,624백만원

- ┌ '92년도 : 331백만원
- ├ '93년도 : 1,001백만원
- └ '94년도 : 292백만원

○ '95년도 세입분(6. 30 현재) : 395백만원

- ┌ 시 군 분 : 197백만원
- └ 국가귀속분 : 197백만원

다. 개발부담금 전액지원의 배경과 효과분석

開發利益還收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된 개발부담금은 그 사업이 시행되는 시·군·구에 50%를 배분하고, 토지관리특계에 50%를 귀속시키도록 한 규정에 불구하고 특별법제29조에서 국가귀속분을 제주도개발특계에 지원하도록 한 것은 종합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확보에 있다.

또 특별법 제정 당시 개발이익은 지역에 환원되어야 한다는 도민정서를 감안한 정치

개발사업이 그 만큼 부진했다는 반증이기도 하지만 전국에서 차지하는 제주지역의 비중을 말해 주는 것이기도 하다.

지난 3년간 개발부담금 국가귀속분을 개발특제로 지원한 액수는 총 16억 24백만원으로 연간 5억원에 불과하다. 그러나 정부의 토지특계 예산규모는 4,400억으로 0.1%에 불과하다. 이점은 우리가 한번 잡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물론 제주지역의 개발부담금의 정부의 토지관리특계에 미세입을 이유로 특계에서 지원하는 사업비를 지원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로 하여금 좋은 구실을 제공할 수 소지가 다분히 있다. 즉 小食大失하는 결과를 초래 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최근에 언론등에서 환경개선부담금 문제도 이지역에서 징수되는 것은 지방세입으로 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지만 이러한 이유로 바람직 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3. 國庫補助金の 引上支院

가. 국고보조금 인상지원의 意味

국고보조금이란 국가가 시책상 또는 자치단체의 재정사정상 필요하다고 인정될때에 그 자치단체의 行政遂行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충당하기 위하여 費途를 特定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反對給付를 요하지 아니하는 자금을 말한다.²⁾ 실정법상 補助金이라는 용어외에 交付金, 負擔金, 出捐金捐金, 給付金, 助成金, 獎勵金 등 여러가지가 사용되고 있으나, 특별법에서 지칭하는 보조금은 앞서 기술한 좁은 의미의 보조금만을 말한다.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에 있어서는 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사업의 범위와 보조금의 예산계상신청 및 예산편성에 있어서 보조사업별로 적용되는 국고보조율(기준보조율)³⁾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을 감안하여 기준보조율에 일정율을 차감하는 差等補助率⁴⁾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므로써 보조대상 사업별로 보조율을 정하고 있다. 그러나 특별법제30조는 이러한 규정에 불구하고 기준보조율에 20%를 가산하

2) 지방재정법제20조

3) 보조금의예 산및관리에 관한법률제9조

4) 보조금의예 산및관리에 관한법률제10조

여 보조하도록 하고 있다. 이것은 제주도의 열악한 재정을 지원하겠다는 파격적인 조치라고 볼 수 있다.

또 국가는 도로·상하수도·전기설비·통신설비·용수시설·항만 등 개발사업과 관련된 공공시설 投資를 우선적으로 지원 하도록 하고 있다.

나. '95 국고보조 상황과 현실

'95년도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제주도는 국가로부터 총203건의 사업에 73,737백만원을 지원 받았고, 이 보조사업의 수행을 위해 도비 19,072백만원, 시군비 23,739백만원을 투자하고 있다. 전체적인 비율을 보면 국고 63.2%, 도비 16.3% 시군비 20.5%를 이루고 있다. 국고 기준보조율이 50%~100%인점을 고려할때 이러한 현황만으로는 국고 보조가 얼마나 적정하게 이루어 졌는가를 파악할 수 없고, 특별법제30조가 규정하고 있는 인상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분간할 수 없다. 현실적으로는 제주도에 이같은 규정을 근거로 국가보조금을 인상 지원해 줄 것을 항상 요구하지만 거의 묵살당하는 실정이고, 인상지원 사례는 거의 없어 이 규정은 死文化된 것이나 다름없다.

그러나 앞으로 제주도의 입장에서는 특별법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보조의 인상 지원은 받지 못 할지라도 도로, 항만 등 공공시설에 대한 투자는 우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4. 地域開發債券의 發行

가. 지역개발채권의 概要

1) 지역개발채권의 성격과 특징

地方債란 지방자치단체가 투자재원의 조달을 위하여 과세권을 실질적인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채무로서 그 채무의 이행이 1회계년도를 넘어서 이루어지며 증서차입 또는 증권발행의 형식을 취하는 것을 말하는데, 특별법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되는 지역개발채권은 종합계획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개발사업의 재원을 조성하려는데 목적인 배려가 깔려있고 당시 예상으로는 제주도내에서 징수되는 개발부담금의 규모도 상당하리라는 기대도 있었다.

그러나 3년이 지난 시점에서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제주도내에서의

이 있다. 발행형식은 매출공채로서 개발사업의 승인을 받은 자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면허·허가·인가를 받은 자를 대상으로 원인행위에 참가하여 소화하는 증권방식을 취하고 있다. 일반적인 지방채발행은 지방자치법제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의 승인과 도의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지만 특별법에서는 내무부장관의 승인 없이 도의회의 의결만으로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지역개발채권은 開發財源의 조성 이외에 과거에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와 사업장 인근지역 주민간에 사업유치를 조건으로 음성적으로 이루어졌던 금전적 거래나 준조세적 성격의 각종 성금납부 관행을 근절하고 개발이익의 제도적 지역환원을 도모하고 있다는 데 그 특징이 있다 하겠다.

2) 제주도지역개발채권의 발행계획

가) 발행근거 : 제주도개발특별법제31조 및 동시행령제19조

나) 채권의 종류 : 지방채증권 중 매출공채

다) 발 행 자 : 제주도지사

라) 발행총액 : 매년 100억원 범위내

마) 발행목적 : 지역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재원 확보

바) 권면금액 : 일만원, 일십만원, 오십만원, 오백만원, 일천만원, 일억원 (7종)

사) 이 율 : 년3% 복리

아) 상환과 이자지급 방법 및 기한

○ 10년거치 30년균등상환 : 체육시설업(골프장업)

○ 10년거치 10년균등상환 : 도시개발사업, 관광지조성사업,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카지노업, 공유수면매립사업, 하천복개공사

자) 매출기간 : '94. 7. ~ 특별법 만료 시한까지

위 내용은 '94. 7. 8 제주도의회가 의결하고 '94. 7. 20 제주도공고 94-115호로 공고한 내용을 '95. 1. 5. 특별법개정에 따라 일부내용을 변경하여 '95. 3. 17 제주도의회가 의결하고 '95. 4. 6 제주도공고 95-55호로 변경공고된 내용이다.

3) 地域開發債券의 買入對象 및 買入基準

개정이전 특별법은 募集公債만 발행이 가능하였으나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賣出公債 발행이 가능해졌고 시행령 제19조제2항에서 地域開發債券의 買入對象과 買入基準도 정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 관광지·관광단지·유원지조성사업 : 사업비의 2%
- 관광호텔업, 해상관광호텔업, 휴양콘도미니엄 : 1객실당 2백만원
- 국민호텔업, 가족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 1객실당 1백만원
- 종합휴양업, 전문휴양업 : 사업비의 2%
- 카지노업 : 사업장면적 1제곱미터당 1백만원
- 골프장사업(18홀 이상) : 1홀당 5천만원
- 삭도·궤도사업 : 사업비의 2%
- 공유수면매립사업, 하천복개공사 : 사업비의 2%이다.

위에서 살펴 본 것 같이 매입대상사업은 대부분이 대규모 수익사업에 초점을 맞추었고 매입금액의 규모도 비교적 크다.

나. 地域開發基金과의 區分

전국 시도단위로 설치(서울특별시제외)되어 있는 지역개발기금은 '69년부터 시행했던 上水道地方債발행을 출발점으로 하고 있다. 지역개발기금은 제주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⁵⁾에 의하여 지방공기업 및 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공급하고자 하는 것으로 과거의 상·하수도 지원금고 기금, 정부지원금 및 융자금, 도·시·군의 출연금, 지방채발행수입을 재원으로 하여, 지방공기업이나 지역개발사업에 년 7~8%의 이율로 융자 지원하고 있다.

여기서 지역개발기금을 거론하는 것은 이기금의 설치목적이나 기금의 조성방법, 지원사업등이 지역개발채권과 거의 類似하고, 이기금설치조례를 근거로 발행하는 地方債도 賣出公債로 발행되는 것이고 消化對象 역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자로 되어 있는 등 중복되고, 명칭도 일반적으로 地域開發債券으로 표기되는등 일반인들이 구분하기가 용이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두가지 지역개발채권의 차이점을 논한다면 특별법에 의한 지역개발채권의 수입은 지역개발특계에 세입편성되나, 다른 하나는 지역개발기금에 세입되고, 특별법에 의한 지역개발기금은 사용용도에 있어서 지역개발사업을 위하여 융자, 보조 또는 직접사업비

5) 제주도조례제1560호

로 사용하는등 제한이 없는 반면 다른 하나는 용자금으로만 용도를 제한하고 있다. 이율과 상환기간에 있어서 특별법에 의한 지역개발채권은 복리 년3%로 하고, 10년거치 10~30년 균등상환으로 하고 있으나 다른 하나는 단리 년7~8%, 2~3년거치 2~10년 균등상환 하도록 하고 있다. 買入(消化)대상에 있어서도 둘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자로 하나 특별법에서는 대규모 수익사업을 중심으로 5개분야 15개 사업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반면 기금설치조례에서는 8개분야 71개 항목으로 거의 모든 인·허가 網羅하고 있고, 매입금액에 있어서도 특별법에서는 규모가 크고, 기금설치조례에 있어서는 소액인점이 다르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설치목적이나 취지에 있어서 대동소이 하고 다만 그 규모나 운영에 있어서만 달리하고 있다는데 주의 할 필요가 있다.

다. 問題點 및 改善方案

전술한 특별법에 의한 地域開發債券은 특별법의 2001년까지의 한시법이라는 점에서 상환과 관련하여 문제제기를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95년도에 발행한 채권은 2005년부터 상환이 개시되어 2035년에 상환이 종료된다. 그렇다면 2002년에는 특별법에 의한 특계는 소멸되기 때문에 회계처리상에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다. 물론 이문제는 그 시점에서 특별법 시한을 연장하거나 대체입법(조례)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실질적인 문제는 상환재원상의 문제인데 이채권의 상환시기에 가서는 이 채권으로 조성된 자금을 잘 관리하지 않는 한 조세로 충당하지 않으면 안된다.

일반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하는 근본 목적은 부족한 공공시설을 확충하므로 그 혜택을 받게 될 다음 세대에도 부담을 지우는 것이기는 하나 장래에 채무를 남기는 것이기 때문에 起債를 함에 있어서 장래의 財政運營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이제 발행되는 地域開發債券발행자금의 용도를 보면 명목상 지역개발에 소요되는 재원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개발사업특계에 세입되어 농·임·축·수산업 진흥을 위한 보조금, 용자금등에 쓰이는 것을 비롯하여 종합계획의 추진을 위한 자금으로 혼합되어 사용되고, 일부는 제주도주민참여개발사업지원기금에 편입되며, 노인복지기금과 장애인복지기금에 각각 10%씩 사용된다. 여기서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것은 이왕이면 지방채로 조성한 자금은 장래의 재정운영을 고려하여 장려성 보조금이나 사회복지비로 사용하는 문제는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 하나의 문제는 이원화되어 있는 특별법으로 발행되는 지역개발채권발행자금과 지역개발기금의 일원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그럴 경우 향후 채권관리 및 조성자금 활용에 훨씬 유용할 것으로 본다.

5. 觀光福券의 發行

가. 한국 福券市場의 展望

우리나라에서는 '69년에 추첨식복권이 주택은행에 의해 최초로 발행된 이래 20년 이상 추첨식복권이 유일하게 국내복권의 자리를 지키다가 '90. 9월에 즉석식 엑스포복권을 필두로 체육복권 등이 발행되어 즉석복권시장이 크게 확장되고 있으며 매주 360만장의 추첨식복권이 발행되고 있다.

1) 복권종류별 발행근거법 및 발행주체

- 주택복권(찬스복권) : 한국주택은행법 → 한국주택은행
- 체육복권 : 국민체육진흥법 → 국민체육진흥공단(외환은행)
- 기술복권 : 한국종합기술금융주식회사법 → 한국종합기술금융주식회사
(조흥은행의 5개 지방은행)
- 복지복권 : 중소기업근로자복지진흥법 → 근로복지공사(조흥은행)
- 기업복권 :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 중소기업공단(중소기업은행)
- 자치복권 : 지방재정법 → 15개 시도(제일은행)
- 관광복권 : 제주도개발특별법 → 제주도(농협)

2) '95 즉석복권별 승인물량, 발행량, 판매현황('95. 10월말현재)

(단위 : 천매, %)

복 권 별	승인물량	발 행 량	승인대비	판 매 량	판 매 율
총 계	920,000	640,000	69.6	397,974	62.2
찬스복권	180,000	132,000	73.3	58,774	44.5
체육복권	120,000	80,000	66.7	55,167	69.0
기술복권	260,000	170,000	65.4	112,828	66.4
복지복권	130,000	94,000	72.3	47,594	50.6
기업복권	80,000	54,000	67.5	45,188	83.7
자치복권	120,000	80,000	66.7	56,005	70.0
관광복권	30,000	30,000	100	22,418	74.7

자료 : 제주도 세정과 내부자료

3) 향후시장 전망

20여년간 추첨식 복권이 발행된 이래 '90년 9월 최초로 즉석식복권이 발행되어 복권 시장이 크게 확장되었으나, 이는 선진국과 비교해 볼 때 걸음마 단계이며 수 많은 게임 및 복권형태가 향후 도입될 전망임을 감안할 때 앞으로 복권시장의 확대는 점진적으로 이루어 질 것으로 보이며, 특히 복지사회구현이라는 차원에서 각종성금의 조성수단으로 복권제도의 활용이 더욱 활발해질 것이 전망된다.

사회적으로도 마권, 카지노, 스롯머신 및 각종 형태의 사행적행태가 음성적인 자금에 유입되는 것과 달리 복권은 국가기관이 통제, 발행하며 조성되는 기금전액이 국민복지사업추진을 위한 재정확보 수단으로 활용되어, 복권발행이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나. 관광복권 '95발행실적 및 '96 발행계획

1) '95 발행실적

- 복권의 종류 : 즉석식복권 (500원권)
- 판매지역 : 전국일원
- '95 발행 및 판매실적 (10월말 현재)

(단위 : 천매, %)

회 차 별	발행일시	발행물량	관 매 량	관매비율
총 계		30,000	22,561	75.2
1회차	'95. 7. 1	15,000	14,445	96.3
2회차	'95. 8. 4	15,000	8,116	54.1

자료 : 제주도 세정과 내부자료

3) '96 발행계획

- 복권의 종류 : 즉석식 복권 (500원권)
- 판매지역 : 전국 일원
- 발행 (예정) 기간 : '96. 1. 1~12. 31
- 발매량 : 1억2천만매 (월 1천만매)
- 년수익 : 판매액의 30% 예상

다. 앞으로 예상되는 문제

관광복권 발행수익은 앞으로 개발재원조성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95년도의 발행수익은 발행물량의 90%를 판매한다고 가정하더라도 40억원 정도로 예상되고 '96년도는 140억원 정도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앞으로 각종복권의 발행매수가 급증하여 판매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다른복권에 비해 판매에 더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는 이유는 관광복권은 후발참여 하였기 때문에 기존 판매망 개척에 어려움과 판매를 대행하고 있는 농협의 점포망이 도시보다 농촌에 집중되어 도시판매망의 점포가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도시 소비자 공략이 어렵다는 점, 그리고 발행규모가 적기 때문에 홍보비, 보너스상품대등에서 다른복권에 열세인 점, 또 관광복권이 지역성을 띠고 있다는 것등에서 다른 복권과의 경쟁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같은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도시 판촉전략을 재점검하여 우량소매인을 확충하고 판매대행기관인 농협이 보다 적극적인 판매활동이 촉구된다.

6. 觀光振興寄與金の 募金

가. 관광진흥기여금의 내용

1) 모금대상 : 골프장, 관광숙박업, 관광이용시설업(카지노 포함)

2) 모금요율

- 골프장
 - 회원제, 정규대중 골프장 : 1라운드당 2천원
 - 일반대중, 간이골프장 : 1라운드당 5백원
 - 골프대회입장료 : 입장료의 10%

○ 관광숙박업 : 객실요금의 2%

○ 관광이용시설업 : 입장료 · 이용료의 20%

○ 카지노시설 : 입장객 1인당 1만원

3) 모금방법

관광진흥기여금 모금대상 시설업주나 관리자가 입장료 또는 이용료 징수시 동시징수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납입 → 모금액의 5%범위내에서 교부금 교부

4) 觀光진흥기여금 年도별, 業種별 모금실적

(단위 : 천원)

년도 \ 업종	계	골프장	관광숙박업	이용시설업	카지노	투전기
계	6,015,648	1,007,891	2,725,536	242,332	2,035,759	10,123
'93	207,001	39,635	107,743	6,475	52,625	523
'94	2,951,982	506,377	1,332,935	114,820	995,493	2,347
'95	2,856,665	461,879	1,284,858	121,037	987,641	1,253

자료 : 제주도 관광과 내부자료

註) '93년도는 12월부터 모금을 시작하였고 '95년도는 9월말까지의 모금실적임, 투전기 업종은 '95년 8월까지 모금이 종료됨

나. 觀光振興寄與金の 성격

寄與金이라는用語는 특별법 외에 公務員年金法과 軍人年金法에서 “給與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공무원(군인)이 부담하는 금액”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國民年金法에서는 “사업장가입자가 부담하는 금액”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들 용어의 정의를 살펴볼 때 특별법에서의 觀光진흥기여금은 이들과 성격과 意味가 다르다. 특별법에서 쓰인 용어가 適切한가의 여부를 論外로 하고 法令에서 쓰이는 용어가 서로 다른 意味로 쓰이는 것은 바람직 하지 못하다. 그러나 특별법에서 쓰이는 용어를 대신할 용어의 선택 또한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또 “募金”이라는 용어는 義務적인 徵收라기 보다는 自意적인 納付, 즉 寄附의 意味가 강하다. 실질적으로도 觀光진흥기여금은 모금이라기 보다는 여느 조세나 공과금과 같이 강제성을 띠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법제정당시 “觀光진흥기여금의 모금”제도를 선택 하였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자료가 없다.

추측컨대, 이미 오래전부터 觀光稅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그 내용도 현재 新設되어야 할 地方稅로 浮刻되고 있는 觀光稅와 거의 類似한 것으로 보아 觀光稅제도를 도입하려는 意圖에서 출발한 것으로, 租稅法律主義라는 원칙 때문에 觀光稅를 地方稅로 新設하기 어려운 障礙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었나 하는 것이다. 외국의 경우, 대다수의 국가에 있어서 觀光部門에 과징되는 세수입의 대부분은 일반세 수입으로 나타나지만, 일부 국가에는 일정한 觀光산업과 소비에 특별히 부과되는 租稅가 존재한다. 외국의 觀光稅 과세 사례를 요약하면 <표1>과 같다.

<표1> 외국의 관광세 명칭

- 과세대상 : 관광객 또는 관광사업체 (호텔, 요식업체등)
- 운영국가 : 스위스등 일부국가
- 국가별 조세명칭
 - 프랑스 : 체재세
 - 스 위 스 : 특별관광세
 - 독일, 스페인 : 관광인지세
 - 콜롬비아 : 관광세
 - 불가리아, 폴란드 : 관광계획세
 - 이탈리아 : 특별요양세

이러한 조세의 존재이유는 관광성장에 요구되는 觀光施設에 대한 투자재원의 확보의 필요성에 있다. 관광시설 투자재원은 개별관광객이나, 관광객방문으로 경제적 利益을 얻는 관광사업체에 과세함으로써 조달될 수 있는 것이다.

최근에 지방자치의 본격적인 실시와 더불어 觀光資源을 이용한 自主財源 확충을 위하여 강원도를 중심으로 觀光稅 도입이 試圖되고 있는데 이런 점에서 제주도는 先發走者인 세이다.

다. 發展方向

관광진흥기여금의 모금은 당초 목적대로 부족한 지방재정에 많은 보탬을 주고 觀光施設 확충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관광진흥기여금의 모금이 관광비용을 증가시켜 제주지역의 관광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현실적으로도 관광객이용시설중 베릿내어촌이나 분체예술원의 경우는 입장객에게 100원미만의 기여금을 모금하므로써 모금액수가 微微한데 비해 모금이 번거롭고 이용요금 인상의 역효과를 이유로 특별법시행조례개정시 삭제를 시도한 바도 있다. 그러나 아직은 여행업체나 관광사업자의 불평은 있지만 관광진흥기여금의 모금이 관광에 미치는 負의 효과에 대한 보고는 없다.

따라서 앞으로 이 제도는 관광세적 차원에서 모금대상을 발전적으로 개발하고 운영과 관리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관광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Ⅲ. 맺는 말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특별법에 의한 세입제도는 당초 의도대로 성공적인 것도 있고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에 의한 수입은 '95년도의 경우 관광복권수입 38억원, 관광진흥기여금수입 29억원을 비롯하여 총 90억이 되고 있고, '96년에는 관광복권수입 140억원, 관광진흥기여금 35억원 등 22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 중에서도 관광복권 발행수입은 그 규모에 있어서도 제일 클 뿐 아니라 우리지역 자원의 消失없이 전국에서 財源을 확보하는 데서 가장 성공적으로 볼 수 있고, 개발부담금 국고귀속분 수입은 당초 기대가 크게 빛나간 경우라 볼 수 있다.

어찌 하였던 제주도개발특별법이 제정되고 종합계획의 추진재원 확보를 위한 제도가 마련된 것은 우리지역 발전을 위해서 다행스러운 일이다.

특별법제정 당시 제일 기대했던, 그리고 우리입장에서 재원 확충에 가장 효과적인 정부가 약속한 국고보조의 인상지원 문제는 이루어 지지 않고 있지만, 이 지역의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하여 나머지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1. 임성일, 지역개발세의 지방재정 파급효과와 개선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4년, 인쇄신화사, 서울
2. 원중호, 제주도 수자원 부존특성 및 개발방향, 대한지하수환경학회 발표논문 1994.
3. 최창호, 지방자치제도론, 삼영사, 1994년, 서울.
4. 권강웅, 지방세법, 조세통람사, 1994년, 서울.
5. 내무부, 지방세외수입업무편람, 1994년.
6. 이상희, 지방재정론, 계명사, 1982년.
7. 남궁진,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관광세 신설방안, 한국지방재정공제회, 1993
8. 내무부, 지방채의 이론과 실무, 1995년.
9. 내무부, 지역개발기금 업무편람, 1995년.
10. 김경성·이용성, 개발부담금제도 총람, 한국경제조사연구원, 1995년.
11. (주)코리아 로타리 서비스, 즉석식 복권개요 및 현황.
12. 김향자, 지방정부의 관광개발투자재원 확보방안, 한국지방재정공제회, 1994
13. 제주도, 제주도 종합개발계획, 1994.
14. 대한민국정부, 1995년도 예산서.
15. 제주도, 1995년도 예산서.
16. 대한민국 법령 및 제주도 자치법규.

<별표 1>

지하수이용허가 시군별 · 용도별 현황

(단위 : m^3/D)

구 분		시군별				
		계	제 주 시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
합 계	공 수	3,743	775	928	580	1,460
	개발량	1,581,316	120,421	68,443	268,859	1,123,593
소 계	공 수	3,292	775	919	493	1,105
	개발량	582,967	120,421	64,261	203,770	194,515
생활용	공 수	1,137	622	234	137	144
	개발량	281,010	101,605	36,380	60,134	82,918
농·축 수산용	공 수	1,890	81	658	269	882
	개발량	256,757	9,399	22,971	131,279	93,208
공업용	공 수	195	39	12	77	67
	개발량	32,672	1,844	4,279	10,209	16,340
기 타	공 수	70	33	15	10	12
	개발량	12,582	7,528	703	2,248	2,049
염지하수	공 수	451		9	87	355
	개발량	998,342		4,182	65,089	929,078

자료 : 제주도 수자원기획단 내부자료

<별표 2>

'94 지하수원수대 업종별 부과징수 및 사용량(총괄)

단위(사용량:천㎥/년, 금액:천원, 공수)

구분 업종별	계			시			군			별										
	부과 공수	사용량	부과 금액	징수 금액	시			군			별									
					부과 공수	사용량	부과 금액	징수 금액	부과 공수	사용량	부과 금액	징수 금액	부과 공수	사용량	부과 금액	징수 금액				
계	728	10,991	360,262	327,354	360	5,418	186,275	176,419	168	3,007	110,816	104,636	102	1,162	23,717	21,499	98	1,404	39,454	24,800
관광숙박용	48	2,754	110,967	105,955	21	1,300	50,739	49,294	26	1,413	59,413	55,846	1	41	815	815	-	-	-	-
관광시설이용	10	390	25,271	19,706	2	24	473	451	5	168	14,621	13,188	2	12	400	273	1	86	9,777	5,794
숙박업용	233	1,353	26,766	25,399	158	975	18,392	17,359	53	322	7,412	7,159	10	17	292	292	12	39	670	589
체육시설용	32	1,164	69,200	68,776	14	798	56,074	55,764	8	251	10,842	10,819	7	85	1,694	1,694	3	30	590	409
목욕장업용	114	2,487	61,168	54,861	70	1,643	42,563	37,104	22	468	11,601	11,068	10	178	3,135	3,100	12	198	3,869	3,589
공장업용	87	1,340	20,860	18,231	15	104	1,473	1,380	5	111	1,574	1,481	40	526	9,069	9,069	27	599	8,744	6,301
식품점객업용	95	459	539	9,701	33	140	4,789	4,258	22	76	1,621	1,494	13	79	2,326	849	27	164	10,280	3,100
세차업용	31	128	3,630	3,481	16	72	2,384	2,355	10	34	508	464	1	13	620	550	4	9	118	113
자동차정비업용	10	33	19,650	516	4	16	239	220	3	12	218	215	1	1	19	19	2	4	63	62
의료시설업용	15	157	4,155	3,439	9	106	2,876	2,160	6	51	1,279	1,279								
시장도매업용	11	125	3,355	3,140	8	94	2,833	2,661	3	31	522	489								
위생처리업용	3	39	1,444	1,418	2	31	1,300	1,284	1	8	144	134								
식품제조가공업용	35	542	11,013	9,852	8	116	2,140	2,139	4	62	1,061	1,000	14	105	3,032	2,523	9	259	4,780	4,190
주류제조판매업용	3	104	2,315	2,315	-	-	-	-	-	-	-	-	3	104	2,315	2,315				
광천음료제조업용	1	16	563	563	-	-	-	-	-	-	-	-	1	16	563	563	1	16	563	563